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나346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나3469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단1540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평

담당변호사 김수원

변론 종결2022. 7. 12.

판결 선고2022. 8. 30.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단15403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12. 12. 주식회사 D와 신용카드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였다.

○ 이후 B은 위 신용카드 관련 대금을 연체하였는데, 주식회사 D는 2017. 1. 1. E 주식회사에 위 신용카드 관련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017. 12. 5.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E 주식회사는 2017. 9. 11.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관련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6. 1.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위 신용카드 관련 대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채권의 잔액은 2019. 11. 12. 기준으로 원금 26,286,229원, 이자 12,928,515원이고, 약정연체이율은 연 23.5%이다.

○ 피고와 B은 1974. 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B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와 B은 2017. 10. 24. 협의이혼의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가지는데, B은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인 3,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B의 10년에 걸친 외도를 이유로 피고와 B은 2017. 10. 24.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외도로 인한 위자료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의 잔여 원리금 합계 39,214,744원(= 원금 26,286,229원, 이자 12,928,515원) 및 그중 잔여원금 26,286,229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는바,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으로서의 채권자의 증명에 따라 부부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의 배우자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하는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B의 채무초과상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8. 10. 당시 B이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26,286,229원의 채무 외에도 F조합에 대한 2,912,000원(2015. 3. 9. 채무 발생)의 채무, G에 대한 3,136,000원(=1,636,000원(2016. 9. 19. 채무 발생) + 1,500,000원(2017. 6. 10. 채무 발생))의 채무, D에 대한 20,409,000원(=3,791,000원(2016. 11. 9. 채무 발생, 계좌번호 끝자리(계좌번호 1 생략)) + 2,683,000원(2017. 2. 13. 채무 발생, 계좌번호 끝자리(계좌번호 2 생략)) + 2,683,000원(2017. 2. 13. 채무 발생, 계좌번호 끝자리(계좌번호 3 생략)) + 2,683,000원(2017. 2. 14. 채무 발생, 계좌번호 끝자리(계좌번호 4 생략)) + 2,985,000원(2017. 3. 9. 채무 발생, 계좌번호 끝자리(계좌번호 5 생략)) + 2,888,000원(2017. 3. 10. 채무 발생,

계좌번호 끝자리(계좌번호 6 생략)) + 2,696,000원(2017. 3. 10. 채무 발생, 계좌번호 끝자리(계좌번호 7 생략)))의 채무를 각 부담하여 그 채무액이 합계 52,743,229원(=26,286,229원 + 2,912,000원 + 3,136,000원 + 20,409,000원)에 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정사실을 함께 보면, B이 피고와 협의이혼을 할 무렵 재산분할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이 약 9,000만 원 상당이므로 이 또한 B의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일체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자체를 B 소유의 개인택시와 별도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이 2017.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7. 10. 24.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B과 피고 사이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2017. 10. 24.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2017. 10. 24.을 기준으로 B과 피고의 혼인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수반되어 발생한 채무로서 이들 사이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다.

B	적극재산	-	개인택시	10,000,000원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무	26,286,229원		
2	F조합 채무	2,455,000원			
3	G 채무	5,090,000원	1,515,000원(2016. 9. 19. 채무 발생) + 3,575,000원(2017. 6. 10. 채무 발생)		
4	D 채무	18,807,000원	3,520,000원(2016. 11. 9. 채무 발생, --(계좌번호 1 생략)1) 계좌번호 끝자리, 이하 같다.) + 2,463,000원(2017. 2. 13. 채무 발생, --(계좌번호 2 생략)) + 2,463,000원(2017. 2. 13. 채무 발생, --(계좌번호 3 생략)) + 2,463,000원(2017. 2. 14. 채무 발생, --(계좌번호 4 생략)) + 2,751,000원(2017. 3. 9. 채무 발생, --(계좌번호 5 생략)) + 2,662,000원(2017. 3. 10. 채무 발생, --(계좌번호 6 생략)) + 2,485,000원(2017. 3. 10. 채무 발생, --(계좌번호 7 생략))		
소계(1+2+3+4)	52,638,229원				
피고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80,000,000원	
소극재산	-	F조합 채무	20,000,000원		

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B과 피고는 43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던 점, B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올렸고, 한편 피고가 소득을 얻을 만한 경제활동을 한 바 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이 법원의 증명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가사에 종사하고 B를 내조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B과 피고 모두 고령으로서 이혼 당시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는 B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 당시 B의 그러한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상적으로 기재된 B 작성의 사실확인서(을나 4호증) 외에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이 법원의 증명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등을 참작하면 B과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비율은 B 50%, 피고 50%라고 봄이 타당하다.2) 라)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B과 피고의 협의이혼 당시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80,000,000원 상당과 개인택시차량 1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B 명의의 채무 52,638,229원과 피고 명의의 채무 20,000,000원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협의이혼에 따라 B으로부터 28,680,885원[=(피고와 B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8,680,885원{=(80,000,000원 + 10,000,000원) ~ (52,638,229 + 20,000,000원)} × 50%3) -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0원 - 피고 명의의 채무액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가액이 80,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 부분인 51,319,115원(=80,000,000원 - 28,680,885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와의 협의이혼 이후에도 가액 약 9,000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적극재산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B이 원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와의 협의이혼 이전인 2017. 8. 10. 당시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4조 제4항4)에 따라 운수종사자 자격취소를 사유로 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고, 또한 이를 이유로 인허가가 제한되어 있어서 제3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그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사실, B와 피고의 협의이혼 직후인 2017. 12. 1. B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의하면 B와 피고가 협의이혼한 2017. 10. 24. 무렵 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이미 사실상 그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을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로 되고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처럼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5)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고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51,319,115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5)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51,319,11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도 가액배상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여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재판장판사이상윤

판사김광섭

판사항기선

별지

1) 계좌번호 끝자리, 이하 같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이 과대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이 60% 또는 70%임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으나, 이는 법률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그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여야 한다.

3) 원 미만은 버림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구청장 ..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다목 기재 생략)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채권액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2. 5. 18.을 기준으로

54,734,061원[원금 및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39,214,744원 + 지연손해금 15,519,317원[=원금 26,286,229원 × 연 23.5% × (2 + 187/365), 원 미만 버림]이다.